

1. 개정이유

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「행정기본법」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,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(안 제163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 개정).

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,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
- 나.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 8. 4. ~ 9. 13.) 중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제1항 중 “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”를 “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별지 제65호서식 중 “20일”을 “14일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6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6호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7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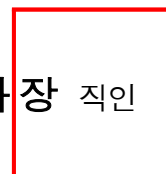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신청인	선임인 []해당 []비해당				
	사업장명				
	주소				
제품명			[] 연구개발용 [] 비연구개발용		
결과	[] 승인 [] 부분승인 [] 불승인		승인번호	※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	
세부 승인결과	신청물질		검토결과		세부 승인결과
	대체명칭	대체 함유량	대체명칭	대체 함유량	
	1.				[] 승인 [] 불승인
	2.				[] 승인 [] 불승인
	3.				[] 승인 [] 불승인
기 타	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직인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3조(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) ①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	제163조(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) ①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62조제5항에서 정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② ----- ----- 경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 삭제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